

임실군의회 공고 2023 - 10호

「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. 4. 10.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이 유

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자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지원하며 세계 여성의 날 등의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양성평등 촉진,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념행사를 지원하고자 함

2. 주 요 내 용

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자 함

3. 참 고 자 료

- 가. 관련법령 : 『양성평등기본법』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 등 : 집행부 의견조회
- 라. 입법예고 : 2023. 4. 10. ~ 4. 15.(5일간)

임실군 조례 제 호

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양성평등주간 행사 등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4조(양성평등주간 행사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군수는 세계여성의날을 기념 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</u>

□ 『양성평등기본법』

제38조(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)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.

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,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.

□ 『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』

제23조(양성평등주간 행사)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.

1. 기념행사
2. 연구발표행사
3.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
4.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
5.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